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2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신영대·안도걸·김기표

김윤덕 • 박희승 • 천하람

한준호 · 임오경 · 안호영

황 희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 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해당 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 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 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 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같은 호 가목·같은 조 제 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장의12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
<u><신 설></u>	제121조의36(전북자치도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전북특별
	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
	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
	진흥지구(이하 "전북자치도투
	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30년
	<u>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u>
	이 해당 지구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
	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9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내 사
	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
	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장에

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 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 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 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 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감면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 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 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 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 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전북자치 도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 로 이전한 경우
-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 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 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 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④ ------

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 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 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 · 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 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 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 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 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 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u>제121</u> 조의22제2항, 제1
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
제2항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 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 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 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 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 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 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 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⑪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제 배제) ①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u>.</u>
⑤
제121조
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⑥ ~ ① (현행과 같음)
세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 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 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 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 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 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 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 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 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 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 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③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 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 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 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 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 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 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 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 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 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 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
4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u>제121</u> 조의33제 <u>2</u>
항, 제121조의36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 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 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 21조의8, 제121조의9, 제12 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1 0 /=l=ll=l	•
1. ~ 3. (현행과	
4	
	ചി 101 യ റി 99
	· <u>제121조의33,</u>
<u>제121조의36</u>	
가	

제121조의22까지, <u>제121조의33</u>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경우

나. ~ 라. (생 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

조의33, 제121조의36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21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및 감면. 다만, 다음 각목의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 21조의8, 제121조의9, 제12 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レ	-	•	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1조</u> 의33, 제121조의36
가
<u>제121조</u> 의33, 제121조의36
나.・다. (현행과 같음)